

의안 번호	2248	<b>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]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5. 2.(목) 이명녀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5. 13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명녀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전 연령대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의정 홍보 수단으로 소셜미디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음
- 2023년 3월부터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게시물 관리 및 이용자 행사 참여 실시 등 체계적인 기준마련과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(안 제5조)
  - 적극적인 의정 참여·홍보·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한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
- 포상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52조
-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- 본 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게시물 관리 및 미디어 이용자의 행사 참여 실시 등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「공직선거법」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 이 법에서 “기부행위”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1.~3.(생략)

4. 직무상의 행위

가. (생략)

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